



의안번호	제 2015 - 21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6. 8. (제6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90차 전체 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4.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결과 1

- II. 향후 일정 2

별첨 김세종,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
김세종,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I. 제90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5. 6. 1.(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중,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I)¹⁾

4.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가) ‘일반장물’ 유형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법률상 ‘상습성’과 구분되면서

1) 양형위원회 제66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

도, 비난가능성 등 양형에 있어서 동등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사기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동일 또는 같은 취지의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함

○ 전문위원단 논의결과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저질러지는 사기, 폭력, 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특별가중인자로서,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 없이 본범과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장물범죄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중인자로 설정함이 적절하지 아니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함이 원칙이고, '범행의 반복'은 중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거나 조직적 범행과 관련될 개연성이 높아 이미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나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와 중복 적용의 우려 있으므로,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91차 전체회의

- 일시 : 2015. 6. 15.(월) 16시
- 안건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II)